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898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 김주영·송갑석·이용빈

최인호 · 정일영 · 이개호

유재갑 • 김승원 • 조정식

임호선 · 김회재 · 강민정

이수진(비) • 이용우 • 장철민

박상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2026 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 정화에 기여하고함(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 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 -----2026년 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12월 31일-----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 $\overline{3}$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2026년 12월 31일---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 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 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

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수 있다.
- 1. ~ 3. (생략)
- ⑥ ~ ⑧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2026</u>
<u>2026</u> 년 12월 31일
<u>년 12월 31일</u>
년 12월 31일
년 12월 31일
년 12월 31일